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규정 3-1-22

규정번호 3-1-22
제정일자 2012.8.27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4차 개정
관리부서 교무입학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계약제로 임용된 전임교원(총장은 제외한다.)의 인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교원재계약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재계약 평가자료 등의 심사자료 확인 및 심사에 관한 사항
2. 계약기간 중 근무상태 및 품성, 학생지도활동 등 평가에 관한 사항
3. 기타 재계약심사와 관련된 사항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부교수 이상 교원으로 구성하되 교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위원장 및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.(개정 2024.7.24.)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(개정 2024.7.24.)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제5조(회의소집 등) ①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심사기준 및 방법) 재계약 교원심사는 전문대학 교원인사관리지침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교수업적평가 심사기준을 적용한다.

① 연구성과 및 전공적합성

② 교육능력 및 학생지도

③ 학교 및 학과발전에 대한 공헌과 교원품위유지

제6조의2(재계약 제외)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,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①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

② 징계의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

③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경우

제7조(계약 해지통보) 계약기간의 만료로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2개월 이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6조에 의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8조(준용)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법인 명지학원 인사규정과 교원인사에 관한 시행규칙을 준용하고, 이에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, 총장이 결정한다.

제9조(회의록 작성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은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.

제10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 업무부서 팀장을 간사로 한다.(개정 2017.02.27., 2018.08.27.)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4조제2항, 제4조제3항)